건설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 시행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가 수급사업 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시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수급사업 자의 동시이행항변권을 규정하는 내용의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돼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 도모와 분쟁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설 및 전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대폭 개정했다.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추가공사가 발생하면 시공에 앞서 갑과 을은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대금을 확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당사자간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급사업 자가 공사를 일시중지 할 수 있게 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수급사업 자로의 보험료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 등 4대 보험 가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수급사업 자의 보험가입 에 필요한 금액을 하도급대금 산정시 별도로 계상해 지급하도록 했다.

대한설비협회가 그동안 4대보험의 공사원가 반영에 대해 관련기관에 끊임없이 건의한 결과 반영된 것이다.

한편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권장사항이지만 준수시 하도급벌점 2점 감점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편집자 주]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및 전기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지난 7월 12일 개정하고 7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갑과을 등 당사자간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분쟁발생 요소를 예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 하도급계약에 대한 발주자의 통제 확보

공정위는 특히 개별적인 거래과정에서의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면서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낮춤으로써 대 · 중소기업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후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서류를 구체화 해 하도급계약에 대한 발주자의 통제를 확보하도록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있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관련 통보서류를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사본 △공사량(규모) ·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면제시 증빙서류)으로 규정해 발주자에 의한 간접적인 하도급계약 통제를 도모한 것이다.

■ 갑의 일방적인 필요에 의한 하도급계약 변경 방지

또 갑의 필요 또는 발주자의 요청으로 공사를 일시 중지할 경우 변경 계약서를 사전에 을에게 교부하도록 해 갑의 일방적인 필요에 의한 하도급계약 변경을 방지했다.

■ '설계변경' 과 '물가변동' 의 명확한 구분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당사자간의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건설업종의 특성을 감안해 계약금액의 변경에 있어 두가지 요인인 '설계변경' 과 '물가변동' 을 구분했다. 기존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설계변경에 의한 하도급대금 변경' 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공사변경 · 중지' 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또 추가공사 시공시 서면미교부로 인해 공사대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대금을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합의하에 시공완료 후 대금을 정하게 했다.

특히 발주자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에 있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 지체상금에 있어 지체일수 제외사유 추가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해 산정되는 지체상금(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에 있어 지체일수 제외사유를 추가했다.

수급사업자의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다.

■ 동시이행항변권 규정

이와 함께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의무 불이행시 원사업자가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동시이행항변권을 규정했다.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동시이행항변권도 규정했다.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을 독촉했음에도 원사업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 4대 보험을 명시적으로 규정, 수급사업자에게 보험료 전가 방지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가입이 의무화된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보험료 부담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했다.

고용 및 산재보험은 원사업자가 가입(다만 수급사업자가 관련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가입)하고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각각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급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의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산정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보험가입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로 계상해 지급하도록 했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제2조【원사업자의 협조】 ① 갑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갑이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이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조【원사업자의 협조】 ① ---------- 30일이내에 하도급계약통보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1.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공사량(규모) ·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예정공정표 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다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② (좌동)	• 발주자에 의한 원사업자 통제를 확보(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갑과 을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령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의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면제된 경우에는 상호간에 보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 다만, 「하도급법시행령」 제3조의3 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⑦ (좌동)	• 하도급법상의 지급보증 면제의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함
제14조【공사의 변경 · 중지】 ①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또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 서면을 사전에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제14조【공사의 변경 등】 ① 갑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 · 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삭제〉	• 갑의 일방적인 필요에 의한 하도급계약 변경을 방지 • 제14조의 2 제2항으로 내용 이관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율에 의한다. ④ 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을에게 증액 지급한다. ⑤ 을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규정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의 계약체결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 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삭제〉 ② (좌동) ③ -- 동 계 약 서 에 ----------.	• 제14조의 2 제3항으로 내용 이관
〈신설〉	제14조의 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갑은 발주자로부터의 설계변경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발주자로부터의 설계변경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비율에 의한다.	• 계약변경 사유를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으로 나누어서 법조문 정비하기 위하여 조문 신설 • 구 제14조 제2항 내용 • 구 제14조 제3항 내용
〈신설〉	④ 갑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신설〉	⑤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갑과 을은 공사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대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나 사전에 대금을 정하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갑과 을은 서로 합의하여 시공완료 후 즉시 대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 추가공사 시공시 서면미교부로 인해 공사대금관련 분쟁이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
〈신설〉	⑥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하도급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 갑이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추가금액을 어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료를 의미함. 이하 같음)를 각각 지급한다.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원사업자의 대금지급 의무 규정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 ②(생략) ③ 제1, 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후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시공전에 제출된 공사예정공정표에서 물가변동이 있는 날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갑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 ②(상동) ③제1항 혹은 제2항 ----------. ④ 제14조의2 제4항 및 제6항은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조정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4조【이행지체】 ① ~ ②(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3(상동)	제24조【이행지체】 ① ~ ②(좌동) ③ (생략) 1 ~ 3(생략) 4. 을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	• 을의 부도로 인해 연대보증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4.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갑이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함) 5. 을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갑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이내에 한함) 6. (현행 제4호와 같음)	인 또는 보증기관이 공사를 계속 수행하게 할 경우 이체기간에서 제외
제25조 [갑, 을의 계약의 해제,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서약의 이행을 (일 또는 월)의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설〉 ② ~ ④ (생략) ⑤ 을은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 [계약의 해제,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서약의 이행을 (일 또는 월)의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 6. (좌동) 7.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7조에서 정한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한 때(제7조 제1항 본문에 의해 갑이 대금지급보증을 안한 경우는 제외) ② ~ ④ (좌동) ⑤ 갑 또는 을은 ---------- ---상대방에게----------.	•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의무 불이행에 대한 원사업자의 동시이행항변권 규정
〈신설〉	제25조의2 [공사의 중지] ① 갑이 계약조건에 의한 선급금과 기성부분의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을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을은 공사중지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통보하고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중지에 따른 기간은 제24조의 지체상금 산정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 원사업자의 공사대금미지급에 따른 을의 동시이행항변권 규정
제27조【보험가입 등】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된	제27조【보험가입 등】 ①----------고용보	•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을 명시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보험등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이하 같다)은 갑이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을은 시공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한다.	험, 산재보험 등은 갑이 가입하고(다만, 을이 관련 공단으로부터 하도급사업자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을이 가입)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은 갑과 을이 각각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 ----------.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② 을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때 갑은 을의 하도급내역을 기초로 산출된 보험가입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 계상 지급한다.	② 갑은 을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을의 하도급내역을 기초로 산출된 보험가입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로 계상하여 을에게 지급한다.	• 저가로 하도급되면서 4대 보험료부담이 수급사업자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
③ ~ ⑤(생략)	③ ~ ⑤(좌동)	

흑맥주는 왜 보통 맥주보다 건강에 더 좋을까?

싹이 나온 보리(맥아)를 건조시키면 맥주의 원료인 엿기름이 된다. 맥아를 뜨거운 솥에 넣어 얼마나 강한 열을 가해 얼마나 오래 굽느냐에 따라 색깔도 달라진다. 많이 구울수록 더 진한 빛을 띠면서 당도도 높아지고 달콤한 맛을 띠게 된다. 맥아를 까맣게 태워서 양조한 것이 바로 흑맥주다.

미국 위스콘신대학의 폴츠John Folts박사가 흑맥주와 보통 맥주의 성분을 분석해보니, 흑맥주는 혈전을 막아주는 탁월한 기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전이란 혈관 속에 형성되는 미세한 핏덩어리다. 혈전이 생기면 자연히 혈관이 막혀 피의 흐름이 원활치 못하고 심장마비의 위험도 높아지게 된다. 폴츠 박사는 개에게 흑맥주를 먹여봤는데, 하루에 500cc 정도를 마시면 이런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흑맥주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플라보노이드(flavonoid) 때문인데 플라보노이드는 과일이나 채소에 진한 색깔을 띠게 하는 항산화 물질이다. 항산화 물질이란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산화작용을 막아주어 노화를 지연시키는 물질이다. 적포도주가 심장에 좋은 것도 바로 이 플라보노이드가 듬뿍 들어 있기 때문이다.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건강상식사전」 中에서